

의안번호	2213692
의 퇴 인	김태년의원
회 답 일	2025.10.31.
추 계 번 호	25E5468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벤처기업 임직원이 교부받은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한 납부특례 및
과세특례 신설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16조6 (벤처기업 성과조건부 주식 소득세 납부특례), 제16조의7 (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한 과세특례)	○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 소득세 납부 특례 신설 - 벤처기업 임직원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성과조건부주식을 교부받음으로써 얻는 이익(교부이익)에 대한 소득세(「소득세법」 제12조제3호에 따라 비과세 되는 금액 제외)에 대하여 임직원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음 -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, 임직원은 성과조건부주식을 교부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교부이익을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되, 교부이익에 관련한 소득세액으로서 대령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(분할납부세액)은 제외하고 납부할 수 있음 - 성과조건부주식을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4개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분할납부세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납부해야함 ○ 벤처기업 성과조건부 주식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- 임직원이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교부이익(교부이익 합계기간*의 교부이익의 합계가 850만원 이하인 경우)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를 신청하는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을 수 있음 * 성과조건부주식의 교부일로부터 역산하여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교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-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은 경우 해당 성과조건부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(「소득세법」 제12조제3호에 따라 비과세 되는 금액 제외)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

주: 이 법률안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의안번호 2213690)의 의결을 전제로 함

II. 미첨부 근거규정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6조6 (벤처기업 성과조건부 주식 소득세 납부특례), 제16조의7(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한 과세특례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해 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게 하고,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소득세 과세 대신 양도 시 까지 과세이연(양도소득세)을 선택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
 - 교부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5분의 1씩, 5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, 교부이익합계기간*에 발생한 교부이익의 합계가 850만원 이하인 경우, 해당 성과조건부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(「소득세법」 제12조제3호에 따라 비과세 되는 금액(500만원) 제외)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
 - * 성과조건부주식의 교부일로부터 역산하여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교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
- 이에 대한 세수변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연간 성과조건부주식을 교부받는 임직원 수, 이들이 교부받은 연간 성과조건부주식 규모, 이에 대한 소득세 납부액, 향후 과세이연 규모 등의 자료 필요

- 그러나, 연간 성과조건부주식을 교부받는 임직원 수, 이들이 교부받은 연간 성과조건부주식 규모 및 과세이연 규모 등에 대한 자료가 부재하고,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자료에 의한 객관적인 추계 곤란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,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수입 감소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박지원	박연서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지원	02-6788-4662	jwpark1209@assembly.go.kr